

창원지방법원 2022. 2. 10 선고 2020나65576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창원지방법원 2022. 2. 10 선고 2020나65576 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 11. 4 선고 2020가단35515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A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지현

피고, 피항소인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송 담당변호사 정동윤

변론 종결2022. 1. 13.

판결 선고2022. 2. 10.

제1심판결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 11. 4. 선고 2020가단35515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1)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피고 C와 D 사이에 2019. 12. 29.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C은 D에게 위 각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8 지분에 관하여, 피고들과 D 사이에 2019. 12. 29.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D에게 위 각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선택적으로, D에게,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피고들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8 지분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채권자대위에 기한 선택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가.항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에 대하여 아래 3.항과 같이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 4쪽 11행부터 19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바꾼다.

갑 제6호증, 을 제1, 7,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망인이 2019. 12. 29. 사망하여 그 상속인들로는 자녀들인 D, 피고들, I이 있는 사실, ② D과 I은 2020. 3. 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느단113호로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위 법원이 2020. 3. 23. 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한 사실, ③ 이에 피고들은, D과 I을 제외하고, 피고들만 상속인으로 표시하여, 상속재산 중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은 피고 C이 단독 소유하고,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은 피고들이 각 1/2 지분씩 소유하는 내용의 2020. 3. 27.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작성하였고, 그 협의를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한 사실, ④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 4. 22. 접수 제20946호 및 제20947호로 2019. 12. 2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위 ③항 기재 분할 내용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D은 피고들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기 전에 이미 상속포기 신고를 하고 그 신고가 수리된 상태였고, 위 상속재산분할협약서에 당사자로 표시되지도 않았는바, 그렇다면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D의 법정상속분에 상당하는 지분을 포함하여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은, D 등이 상속을 포기하여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고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나머지 상속인들이 유효하게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기 때문이지,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들과 D 사이에 D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결과로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상속의 포기가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들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등기원인인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이 D의 법정상속분에 상당하는 지분 범위에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에 대한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선택적 청구)

D은 상속포기 신고의 수리 전에 망인 명의의 예금을 인출하여 사용, 처분함으로써 민법 제1026조 제1호의 법정단순승인 사유에 해당하는 처분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들과 동일한 상속 단순승인을

하였다 할 것이므로, D을 제외하고 피고들 사이에 체결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은 무효다. 원고는 D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D을 대위하여, 무효인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에 기하여 마쳐진 피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으나, 다만, 그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피고들을 상대로 D에게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한다.

나. 판단

이미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D이 망인 계좌의 예금 인출에 관여한 사정만으로는 D이 민법 제1026조 제1호의 상속재산 처분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들이 체결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이 상속인 일부를 누락하여 효력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채권자대위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선택적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에 기한 청구에 관하여 판단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피고들에 대한 선택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민정

판사서경원

판사진민희

별지